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시기는 국가정체성 및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보훈교육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2023. 3. 4.>